예 산 총 칙

2020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083,415,814	62,502,474
일반회계	1,748,777,305	52,463,319
특별회계	334,638,509	10,039,155
공기업특별회계	233,832,235	7,014,967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582,010	47,46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5,919,243	2,877,577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36,330,982	4,089,929
기타특별회계	100,806,274	3,024,188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7,318,344	219,550
수질개선특별회계	14,315,863	429,476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20,619,567	618,587
기반시설특별회계	384,571	11,537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	130,917	3,928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2,342,405	70,272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481,733	44,452
주택사업특별회계	104,418	3,133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50,994,669	1,529,840
지하수특별회계	3,113,787	93,414

제 2 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3,004,075천원으로 한다.

제 4조 2020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57,500,000천원으로 한다.